일자리 르네상스, 「부산」

2020년 부산지역
주요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상공회의소

※ 이 자료는 2020.9.23.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부산지역
주요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1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 8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고용노동부) 10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12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고용노동부) 14
고용유지비용 대부(고용노동부) 16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고용노동부) 18
건강 ·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고용노동부) 1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고용노동부) 20

Contents

부산지역
주요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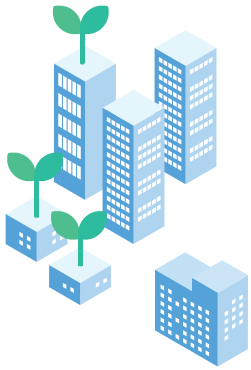

2 고용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고용노동부) 22
일 · 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고용노동부) 25
정규직 전환 지원(고용노동부) 27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고용노동부) 30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간접노무비)(고용노동부) 32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고용노동부) 34

3 제도안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고용노동부) 38
대량고용변동 신고(고용노동부) 45

4
직업훈련 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고용노동부) 48
일학습병행(고용노동부) 50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부산광역시) 53

5
경영 및 창업

코로나 19 피해 시민 · 기업 지방세 지원(부산광역시) 60
전략산업 유동성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부산광역시) 61
기술보증(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62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중심)(중소벤처기업부) 63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중심)(중소벤처기업부) 64
소상공인 재기지원(중소벤처기업부) 65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부산광역시) 66
부산모두론(부산시 영세사업자 특별금융지원)(부산광역시) 68
준재해 · 재난대비 특례보증(부산광역시) 69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사업(중소벤처기업부) 70
부산형 착한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부산광역시) 71
MICE행사 지원사업(부산광역시) 72
미팅테크놀로지 바우처 사업(부산광역시) 73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중소벤처기업부) 74

6
채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고용노동부) 78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고용노동부) 80
중소 · 중견기업 채용보조금(고용노동부) 8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84
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86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89
고용위기업종 일자리 매칭 지원(부산광역시) 91
관광 · MICE 성장사다리별 고용체계 조성(부산광역시) 92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주력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부산광역시) 93
소재 · 부품 · 장비 중심 고용창출(부산광역시) 94
신발산업 첨단융합허브 클러스터 지원(부산광역시) 95

부산지역
주요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1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고용유지비용 대부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건강 ·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개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15% 이상 매출액 감소 또는 예약 취소·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이 발생할 것

②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③ 총 근로시간이 6개월 전~4개월 전(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휴업을 하였거나, 연속해서 1개월간 휴직을 하였을 것

④ 휴업·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것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2/3~1/2*

(1일 상한액 6.6만원, 연 240일〈~'20.12.31.〉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20.3.16.~'21.3.31.)

9/10지원, 1일 상한액 1인 7만원 (대규모기업 2/3~3/4*, 6.6만원)

* 규모율 50% 이상

⇒ 일반업종('20.4.1.~9.30.)

9/10지원(대규모기업 2/3), 1일 상한액 1인 6.6만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노사협의 (사업주, 근로자대표)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실시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승인 : (사업주) 휴업 또는 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고용센터) 승인

* 구비서류 : ①매출액 장부, 예약 취소·이용객 감소·원자재 수급차질·학원 휴업 권고문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임을 증빙하는 서류, ②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휴업 또는 휴직에 대해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소재지 관할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월별 임금대장, 휴직수당 지급대장, 출퇴근카드 등 출퇴근 현황 확인 가능 서류

지원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부산고용복지+센터 : 051-860-1923 / 051-860-1979 / 051-860-1927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 051-796-7213 / 051-796-7216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 051-330-9954 / 051-330-9986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개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지원대상

①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19인 이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이상(1,000명 이상)

② 무급휴직 : 9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이상(1,000명 이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전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지원내용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 (사업주지원금)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청·지청)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부산청 : 051-860-1923~7, 1931, 2072, 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5
- 부산북부 : 051-330-9951~5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개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대상

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이 발생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의 근로자에게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제외) : 무급휴직 즉시
- 일반 업종 :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 (현행)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

지원내용

지원수준 및 기간 月 50만원 X 최대 90일 (한시시행 : ~'20.12.31.)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 프로그램〉

특별고용 지원업종	일반절차	→	유급휴업 1개월 실시	→	무급휴직 실시 (30일 이상)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즉시 무급휴직 실시 (30일 이상, 7일전 신고)	최대 90일 월 50만원
일반업종	일반절차	→	유급휴업 3개월 실시	→	무급휴직 실시 (90일 이상)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 실시	→	무급휴직 실시 (30일 이상, 7일전 신고)	최대 90일 월 50만원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부산고용복지+센터 : 051-860-1923 / 051-860-1979 / 051-860-1927
-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 051-796-7213 / 051-796-7216
-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 051-330-9954 / 051-330-9986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사업목적

고용유지 위기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 6개월간 지원

*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勞) 임금감소가 발생하는 고용유지조치 수용

지원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매출 감소 등)가
②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해
③ 고용을 유지하고,
④ 임금이 감소한 경우

* 중복지원 제외 :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지원금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月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2020년 총예산 350억원 범위 내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지원절차

공모방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및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 (우편 · 팩스 · 이메일 제출도 가능)

- 공고일부터 '20.12.31.까지 매월 공모를 진행하고 익월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장 선정 후 지급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참여신청서(계획서) 심사·승인·통보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서 이행,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요건 확인 및 지원금결정 (의뢰)/지원금 지급 (고용부/고용센터) → 위반사업장 제재 (고용센터)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 부산청 노사상생지원과 : 051-850-6335, 6441
-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051-559-6618
-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309-1595

고용노동부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
-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

대부액	1개사 1회 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대부조건	연리 1.5%,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체이율 연 9%

고용노동부

고용유지비용 대부

지원절차

매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접수 후 대부 실행(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 계획 신고 및 대부신청 (사업주→고용센터 공단) ➡ 고용유지 조치 (사업주) ➡ 약정체결 및 융자 (공단→사업주)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공단) ➡ 고용유지 비용 융자상환 (사업주→공단)

상환방식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공단 지정계좌로 송부되어 상환 완료

* 대부액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금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 사업주 직접 상환

신청기간

'20.8.3. ~ '20.12.15.까지

* 신청접수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지원문의

- 복지사업 콜센터 : 1644-0083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 welfare.kcomwel.or.kr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개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

* 관광 · 공연업은 '20.3월분~'21.3월분에 대해, 항공기취급업 등은 '20.4월분~'21.3월분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지원(신청)절차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고용노동부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

개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체금 미부과(징수 예외) 또는 체납처분 유예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미부과
  * 관광 · 공연업은 '20.3월분~'21.3월분 체납보험료, 항공기취급업 등은 '20.4월분~'21.3월분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미부과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 아님)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지정일 이전 유효한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전의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뿐이며 체납처분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님

지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연체료 미부과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지원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개요 및 지원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지연신고 1명당 부과되는 과태료 3만원 면제
  * (대상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기존에 제출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사항 정정
- 다만,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 대상이며, 미제출이 적발되어 신고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 기업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 포함

지원(신청)절차

- 지원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등 지연신고 시 과태료 면제 처리*
  (별도 과태료 면제 신청 절차는 없음)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등을 지연하여 신고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지)청으로 과태료 부과의뢰 미실시
-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 면제 등 관련 안내 실시

지원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88-0075

부산지역
주요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2

고용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 · 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개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가족돌봄·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요건

간선택제 전환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마련,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임신기,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전환제도 운영(전환시 근로조건, 전환사유, 최대 전환기간 등) 및 전일제 복귀 보장 등 포함

지원대상

– 고용기간 6개월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근로자

*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2020.3.1.~12.31. 한시 적용)

• 근속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도 지원 가능

– (단축 후)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② 최소 2주 이상 전환

③ 전환전 시간비례 임금이상 지급

④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 (전환전 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⑤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관리

⑥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월 최고 40만원(주 15~25시간) ~ 월 최고 24만원(주 25~35시간) 지원

- 근로시간비례 임금인상액이 40만원(또는 24만원)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 지원

※ 임신근로자: 월 최고 40만원

간접 노무비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인건비의 80%를 한도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

〈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수준 인상 〉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대상
	현행	인상	
임금감소 보전금	15~25시간 : 월 40만원 이내, 25~35시간 : 월 24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 월 40만원	15~25시간 : 월 60만원 이내, 25~35시간 : 월 40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 월 60만원	모든기업
간접 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 60만원 이내 그외 : 30만원 이내	중소 : 80만원 이내 그외 : 30만원 이내	모든기업

*적용기간 : 2020.3.1. ~ 12.31.(10개월) 단축근무자 한시 적용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절차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결과를 첨부하여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 www.worklife.kr
- 부산청 : 051-860-1923~7, 1931, 2072, 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5
- 부산북부 : 051-330-9951~5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지원개요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이행을 위해 아래 표(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 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지원내용

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5/10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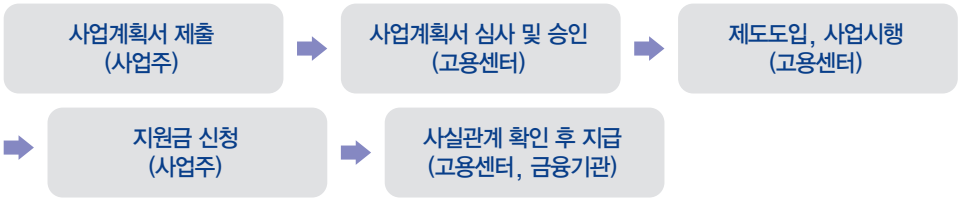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 www.worklife.kr
- 부산청 : 051-860-1923~7, 1931, 2072, 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5
- 부산북부 : 051-330-9951~5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목적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지원

인원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사업추진체계

사업참여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 사업참여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홈페이지 : www.ei.go.kr
- 부산청 : 051-860-1923~7, 1931, 2072, 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5
- 부산북부 : 051-330-9951~5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목적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 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 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②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근로자)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부산청 : 051-860-1923~7, 1931, 2072, 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5
- 부산북부 : 051-330-9951~5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개요

소속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 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내용

주3회 이상 활용자는 1인당 1주에 10만원, 주1~2회 활용근로자는 1인당 1주에 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기 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 만원	5 만원	520 만원	260 만원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업주) 유연근무 실시 이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고용센터) 승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등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을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 승인

제도도입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에 따라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유연근무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등

지원요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 www.worklife.kr
- 부산청 : 051-860-1923~7, 1931, 2072, 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5
- 부산북부 : 051-330-9951~5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사업목적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지원내용

기업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서비스, 장기미채용 기업은 맞춤컨설팅을 통해 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제공

종류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구직자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 시 동행 면접 지원 등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지원절차

구인/구직 신청
(사업주, 근로자)
➡
상담 및 교육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
취업알선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지원문의

- 부산센터 : 051-860-2002
- 부산동부센터 : 051-760-7116
- 부산북부센터 : 051-330-9980

부산지역
주요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3

제도안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
대량고용변동 신고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

1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개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지원기간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2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

조선업

구직자 '16.7.1.~'20.12.31. 6차례* 연장

* ▲(1차) '17.7.1.~'18.6.30. ▲(2차) '18.7.1.~'18.12.31. ▲(3차) '19.1.1.~'19.6.30. ▲(4차) '19.7.1.~'19.12.31. ▲(5차) '20.1.1.~'20.6.30. ▲(6차) '20.6.30.~'20.12.31.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에 해당하거나
  *다만, 현대중공업㈜(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제외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기업(상기 제외 사업장 포함)으로부터 매출액의 1/2 이상이 발생함을 입증한 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

관광·공연업 등

지원기간 '20.3.6.~'21.3.31.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해운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항공사업법」,「공연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신고 · 등록한 업체

〈업종별 지원대상 확인방법〉

업종	분류 기준	
여행업	업종코드	•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개별법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관광 숙박업	업종코드	• 55101(호텔업) • 55103(휴양콘도 운영업)
	개별법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 운송업	업종코드	• 49232(전세버스 운송업) • 50111(외항 여객 운송업) • 50121(내항 여객 운송업) • 50201(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50202(항만 내 여객 운송업) • 51100(항공 여객 운송업)
	개별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같은 법 제3조제1호~제6호)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업체
공연업	업종코드	•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개별법	•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

항공기취급업 등

지원기간 '20.4.27.~'21.3.31.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에 해당하거나 또는 개별법 등에서 정한 방법 (면허, 등록, 소관부처 장관 확인 등)으로 확인된 업체

<table>
<tr><th>업종</th><th colspan="2">분류 기준</th></tr>
<tr><td rowspan="4">항공기 취급업</td><td>업종코드</td><td>• 52939(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td></tr>
<tr><td rowspan="3">개별법</td><td>•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td></tr>
<tr><td>
<table>
<tr><th>지원대상 사업주</th><th>지원대상 근로자</th></tr>
<tr><td rowspan="2">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 중매출액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주
*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중무급휴직 신속프로그램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50% 미만인 업체에서 항공기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도 지원가능</td><td>①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
→ 업체 소속 근로자·퇴직자 전체가 지원대상(종사업무 제한없음)</td></tr>
<tr><td>②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 미만인 경우
→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근로자·퇴직자만 지원대상</td></tr>
</table>
〈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 참조〉
</td></tr>
<tr><td rowspan="2">면세점</td><td>업종코드</td><td>• 47130(면세점)</td></tr>
<tr><td>개별법</td><td>「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td></tr>
<tr><td rowspan="2">전시 · 국제회의업</td><td>업종코드</td><td>• 75992(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td></tr>
<tr><td>개별법</td><td>•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td></tr>
<tr><td>공항버스</td><td>개별법</td><t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td></tr>
</table>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

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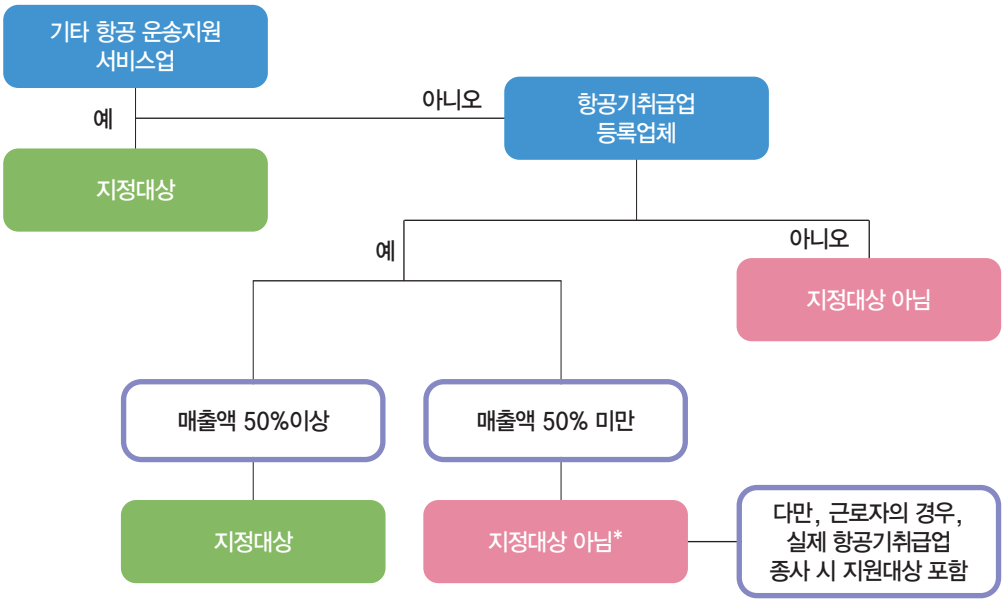

•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매출액 50% 요건과 관계 없이 항공기취급업에 종사할 경우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

3 주요 지원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 · 휴직)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하단 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 만원		1일 7 만원 (대규모기업 6,6 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90일)		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 무급휴직 실시(30일)
	지원한도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서 결정		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 일반과 동일
				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 월 50만원(조선업은 비해당)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3천만원
고용 · 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

3 주요 지원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명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 (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2종류 이상 융자 시) 3천만원
	대상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1.1.~1.31.	2.1.~3.31.	4.1.~9.30.	10.1.~
우선지원대상기업	67%(2/3)	75%(3/4)	90%(9/10)	67%(2/3)
대규모기업	50%(1/2)	67%(2/3)	67%(2/3)	50%~67% (1/2~2/3)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일반업종)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 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한시적('20.3.9.~12.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소득요건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 ('20년 월 388만원)로 완화(임금체불생계비 제외)

지원문의

- 부산청 : 051-860-2156
- 부산동부지청 : 051-559-6638
- 부산북부지청 : 051-309-15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고용노동부

대량고용변동 신고

신고목적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재취업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 법해석 상 고용상의 대량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신고기준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31조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

신고방법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지원문의

- 부산고용노동청 : 051-860-2153
- 부산동부고용지청 : 051-559-6638
- 부산북부고용지청 : 051-330-9932

부산지역
주요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4

직업훈련 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일학습병행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지원개요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1일 8시간 (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집체훈련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상시노동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 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00천원 한도)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추진체계

훈련과정 인정신청 (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기관) →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비용 신청 (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비용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

지원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사업목적

독일·스위스式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 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사업내용

선정대상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학습근로자조건	1년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지원내용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현장(외)훈련 훈련비, ▲훈련지원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양성교육 지원
자격부여	훈련 수료 후, 훈련성과 평가 → 일학습병행 부여(예정)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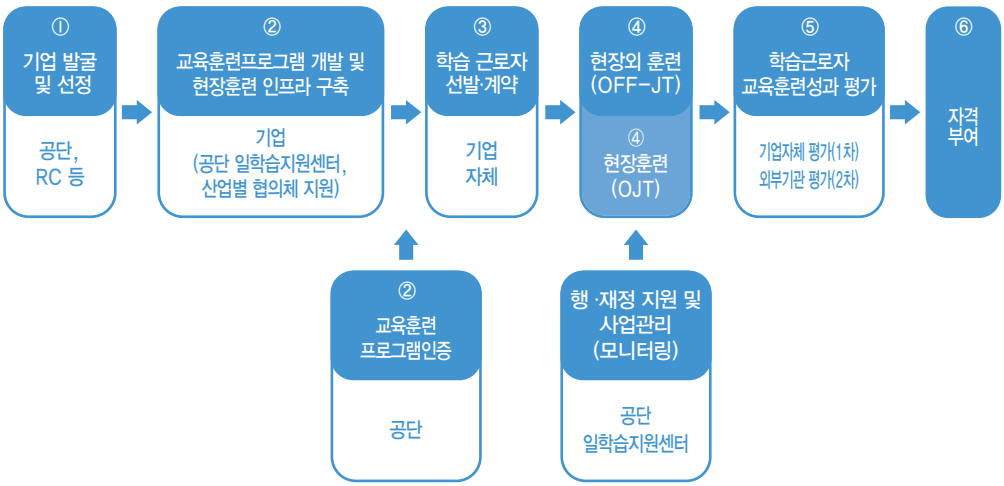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참여유형

	대상 및 유형	명칭	주요 내용
재직자	단독기업형		명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 실시
	공동훈련센터형		대기업·대학·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 훈련(OFF-JT) 실시·지원
재학생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3일)와 기업(2일)을 오가며 직업교육 + 도제훈련 → 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Uni-Tech)	전문대 중심으로 고교과정과 통합하여 기간 단축 및 조기입직 유도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大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 장기 현장실습 + 일학습병행 참여
後학습	P-Tech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주요 특징

-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 운영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주도
-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 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교육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평가를 거쳐 일학습병행자격을부여 (학력 중심이 아님) →자격의 통용성 확보

지원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일학습병행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부산광역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

지원개요

청장년 구직자 대상으로 전산회계, 기계설계, 요리, 이미용 등 직종별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후 취업으로 연계하여 실업해소 및 지역기업의 구인난 해소 도모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부산 거주 미취업자

* 청년특화과정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부산 거주 청년 대상

지원내용

- 맞춤형 직업훈련(과정당 3~4개월, 300~500시간) 및 훈련수당(월 최대 25만원)
- 훈련 중 취업 상담 및 수료 후 취업처 알선

지원절차

훈련기관	매년 초 부산시 훈련기관 모집공고에 따라 선정
훈 련 생	지정 직업훈련기관으로 참가 문의

지원문의

부산시 지정 직업훈련기관 (훈련기관 찾기)

부산광역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

2020년 훈련기관 목록

청년특화과정 : 10개 과정 200명

연번	기관명	대표자	과정명	지역	문의전화
1	KNT직업전문학교	김은철	5G기반 스마트웹디자인 개발	연제구	1544-4169
2	나래디자인학원	백민정	UIUX웹콘텐츠디자인(빅데이터활용)	중구	245-1650
3	뉴월드직업전문학교	신도식	4차산업을 위한 기계설계 양성 (CAD마스터, 3D형상모델링, 인벤터)	사상구	301-3507
4	덕천미래컴퓨터학원	정성민	3D프린터활용 기계부품 설계	북구	341-1600
5	미래직업전문학교	류용수	3차원 모델링을 활용한 항공부품가공	동구	463-0003
6	부산산업직업전문학교	박충식	2D, 3D 활용 가상·증강현실(AR, VR)	연제구	502-4853
7	부산예일직업전문학교	조재훈	게임콘텐츠제작전문인력양성	부산진구	467-1912
8	양정인력개발센터	양효숙	글러벌 관광마케팅 MCE 컨벤션 실무자 양성	부산진구	851-7887
9	화신능력개발원	김영	디지털 도시재생 컨버전스	중구	817-0206
10	효성직업전문학교	박명순	3D프린팅메이커스양성과정	해운대구	746-8768

부산광역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

2020년 훈련기관 목록

언택산업 특화과정 : 11개 과정 210명

연번	기관명	대표자	과정명	지역	문의전화
1	KNT직업전문학교	김은철	포스트코로나 취약계층 5G기반 디지털 디자인 과정(비대면 취업 및 창업)	연제구	1544-4169
2	경원전산학원	강조원	건축설계 & 3D프린터	동래구	501-3536
3	나래디자인학원	백민정	영상콘텐츠제작(UIUX, 영상편집)	중구	245-1650
4	뉴월드직업전문학교	신도식	4차산업을 위한 기계설계 디자인 (포토샵, CAD마스터, 인벤터, 3D형상 모델링)	사상구	301-3507
5	부산기장직업전문학교	김정화	스마트 서비스 기획 및 플랫폼의 비즈니스 양성	기장군	721-8022
6	부산메인직업학교	장경숙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 (국내 및 글로벌) 취·창업 인재양성	사하구	208-0170
7	부산평생교육원	이현승	이커머스 B2B 전문셀러 과정	중구	263-8653
8	중앙컴퓨터회계학원	김재준	언텍트 기업환경 영상컨텐츠 제작 및 경영마케팅 전문교육	중구	412-9361
9	양정인력개발센터	양효숙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온라인 관광 콘텐츠 제작전문가 양성	부산진구	851-7887
10	효성정보직업전문학교	박찬성	뉴딜산업혁명의 중심 빅데이터 전문가 (파이썬)	부산진구	642-7001
11	효성직업전문학교	박명순	포스트코로나 대응 온라인쇼핑몰 관리자 양성과정	해운대구	746-8768

부산광역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

2020년 훈련기관 목록

일반과정 : 45개 과정 1,510명

연번	기관명	대표자	과정명	지역	문의전화
1	GK보석디자인전문직업학교	김정숙	귀금속공예&주얼리3D모델링	부산진구	642-0014
2	KNT직업전문학교	김은철	기업 맞춤형 사무실무 및 회계	연제구	1544-4169
3	경원전산학원	강조원	실내건축설계(디자인) 실무	동래구	501-3536
4	국제요리직업전문학교	유영선	한식, 양식, 떡 자격증 및 실무조리	동래구	553-1763
5	나래디자인학원	백민정	UIUX웹디자인 & 쇼핑몰제작	중구	245-1650
6	낙원미용직업전문학교	최선영	헤어미용양성과정	동래구	554-7887
7	뉴월드직업전문학교	신도식	전산회계사무실무자양성	사상구	301-3507
8	대산직업전문학교	김영자	소방설비(전기)인력양성과정	연제구	867-0770
9	대연메디칼간호학원	윤석란	간호조무사과정	남구	637-6601
10	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구재실	CAD설게사무인력양성	남구	622-7296
11	대한글로벌학원	정복교	4차산업혁명도시농업전문가	부산진구	805-7878
12	덕천미래컴퓨터학원	정성민	기계부품설계(AUTOCAD, 3D-INVENTOR)	북구	341-1600
13	동부산중장비학원	이은구	물류·건설기계 운전자 양성(굴삭기, 지게차)	부산진구	746-8440
14	동성직업전문학교	김태완	국제무역 및 FTA원산지 실무	부산진구	933-3400
15	럭키도배기술학원	정성목	도배, 바닥재 시공 양성과정	부산진구	806-6963
16	문화요리학원	이경희	한식자격증 및 취업요리	부산진구	804-1124
17	미래아이컴퓨터학원	서귀희	기계설계(CAD Inventor) 사무인력 양성	부산진구	897-1087
18	미래컴퓨터학원	정한구	회계사무원 양성	사상구	305-7766
19	부경간호학원	주명희	간호조무사자격증취득과정	수영구	759-0079
20	부산기장직업학교	김정화	기업사무회계	기장군	721-8022
21	부산메인직업학교	장경숙	제품설계모델링과정	사하구	208-0170
22	부산예일직업전문학교	조재훈	회계사무원 양성	부산진구	467-1912

부산광역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

2020년 훈련기관 목록

일반과정 : 45개 과정 1,510명

연번	기관명	대표자	과정명	지역	문의전화
23	부산자동차직업학교	박홍일	자동차 정비	서구	255-3533
24	부산전기학원	오기복	스마트전기설비관리 기초	부산진구	803-0803
25	부산패션디자인학원	조봉준	스마트패션디자인	동래구	554-8603
26	부산평생교육원	이현승	IoT융합(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구	263-8653
27	사상직업전문학교	유진	기업세무회계	사상구	305-1015
28	새동아직업전문학교	전원석	ERP(회계, 인사, 공동주택관리) 사무원	사하구	294-2001
29	새부산간호학원	김태환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과정	사하구	264-0101
30	센텀직업전문학교	김영애	디지털디자인 사무전문가 양성과정	해운대구	781-5052
31	수영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김응권	제과제빵취업대비반	수영구	753-4949
32	양정인력개발센터	양효숙	ERP멀티사무원	부산진구	851-7887
33	여원회계전산직업전문학교	김두환	전산경리회계실무(아파트회계포함)	동구	462-6727
34	올패션디자인학원	박순복	더(+)Go! 스마트패션 스타트업	사상구	315-8882
35	윤정순뷰티아카데미	윤정순	미용(헤어, 네일) 과정	해운대구	731-0561
36	일터실내건축직업전문학교	김기범	인테리어(도배, 장판) 실무과정	연제구	866-4933
37	제일간호학원	정호중	간호조무사과정	동래구	647-2555
38	중앙컴퓨터회계학원	김재준	전산세무회계사무실무	중구	412-9361
39	춘경직업전문학교	이선임	한식, 양식, 중식 자격증 & 취업과정반	사하구	207-5513
40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안재수	전기기능사취득과정	사상구	328-3473
41	해운대미용학원	장영선	헤어자격증&실무과정	해운대구	744-2077
42	해운대직업전문학교	김금옥	한양중일식조리	해운대구	731-0111
43	화신능력개발원	김영	건축내장시공(아트타일)	중구	817-9300
44	효성정보직업전문학교	박찬성	기업형 스마트실무사무원 양성과정	부산진구	642-7001
45	효성직업전문학교	박영순	중소기업 특화형 멀티 회계 사무원 양성과정	해운대구	746-8768

부산지역
주요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5

경영 및 창업

코로나 19 피해 시민 · 기업 지방세 지원
전략산업 유동성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기술보증(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중심)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중심)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부산모두론(부산시 영세사업자 특별금융지원)
준재해 · 재난대비 특례보증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사업
부산형 착한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MICE행사 지원사업
미팅테크놀로지 바우처 사업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부산광역시

코로나 19
피해 시민·기업 지방세 지원

지원개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등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등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 · 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지원내용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 · 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 분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1년) 범위내 고지유예 · 분할고지 · 징수유예 ·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 · 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지원절차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피해사실 증빙 서류 구비)

온라인 신청 :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www.etax.busan.go.kr)

지원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구 · 군 세무과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유동성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및 제조업 등 전략산업 영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1,500억)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부산시 7대 전략산업 영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신용등급 1~7등급)

지원내용

구 분	Track 1(제조업)	Track 2(비제조업)
지원규모	1,000억	500억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용등급 1~7등급 • 7대 전략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	•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용등급 1~7등급 • 7대 전략산업 중 비제조업 영위 기업 (서비스업 등)
대출한도	2억원 (본건, 재단 및 신·기보 포함 8억원 이내)	1억원 (본건, 재단 및 신·기보 포함 8억원 이내)
금 리	은행 개별금리(변동)	
市 이차보전	2%(최초 2년간)	
상환조건	2년 만기 일시상환(총 8년간 1년단위 연장가능)	
비 고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소상공인특별자금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문의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 051-860-6600

기술보증(기술보증기금)

지원개요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대출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어음보증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무역금융보증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구매자금융보증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 구매전용카드 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지원절차	보증신청 – 상담 – 기술사업계획서제출 – 기술평가 – 심사 · 승인
접수기간	상시접수

지원문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중심)

지원개요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지원내용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한도 30억원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시설자금 100억원, 무역금융 등 70억원)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지원절차 보증신청 – 상담 – 자료수집 및 조사 – 심사 · 승인

접수기간 상시접수

지원문의

-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 1588-6565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odit.co.kr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중심)

지원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 · 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절차 보증상담 – 신청 · 접수 – 신용조사 – 심사 · 승인

접수기간 상시접수

지원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 www.koreg.or.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지원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취업 및 업종전환 ·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점포철거, 재기교육 등 지원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 · 시설 처분방법, 채무 관리,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점포 철거 원상복구 지원	점포 철거 · 원상복구 관련 컨설팅 및 실행 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재기교육	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 접수 – 지원대상 등 확인 – 점포철거지원 등
접수기간	현재 진행 중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지원개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액 급감으로 임대료 등의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특화 지원상품 (지원규모 총 500억원)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창업 3년 미만 우대 부산시 전략산업 업종, 제로페이 및 동백전 가맹점 우선지원)

지원내용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이차보전	부산시에서 이자 일부 지원 → 1.7%(1년)
조 건	5년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금리 3%대(은행별 상이, 변동), 보증요율 0.7%

지원절차

신 청	2020년 3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 *부산, 하나, 신한
필요서류	(상담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신분증 (심사 시) 거주지 전세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수입금액증명원) 등
절 차	자금신청(신보재단, 은행) – 현장실사(신보재단, 은행) – 지원자격심사(신보재단) – 보증서발급(신보재단) – 자금대출(은행)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지원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 051-860-6600
-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 051-860-6880
-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 051-860-6750
-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 051-860-6700
-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 051-860-6800
-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 051-860-6730
-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 051-860-6780
-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 051-860-6687

부산광역시

부산모두론(부산시 영세사업자 특별금융지원)

지원개요

금융사각지대에있는 영세사업자들을대상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지원대상

영세중소기업	재단 신용평가시스템 BB ~ CCC 등급
영세자영업자	대표 신용등급 6 ~ 8등급

지원내용

구분	(Track1)영세중소기업	(Track2)영세자영업자
지원규모	500억원	500억원
업체당 지원한도 (같은 기업당, 신 · 기보 포함)	50백만원 이내	30백만원 이내
등급별 지원한도	BB(50백만원) B(40백만원) CCC(30백만원)	6등급(30백만원) 7등급(20백만원) 8등급(10백만원)
	※ ① 대표 신용등급에서 평가모형적용하여 한도확대 가능 ② CCC등급, 8등급 부점장 전결	
대상채무	운전자금, 신규보증에 한정(기보증포함증액보증 가능)	
보 증 료	0.7% 고정	
보증비율	100%	
금 리	우대금리 - 이차보전(0.8%p)	
보증기간	취급 후 5년 (1년 일시, 4회 연장가능)	
참여은행	부산, 국민, 농협, 하나 ※ 향후 은행 추가	
시 행 일	2020.6. ~ 2023.6.(3년)	

지원문의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 051-860-6600

부산광역시

준재해 · 재난대비 특례보증

지원개요

지역 내 발생한 질병, 화재, 재해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지원규모 총 1,000억원)

지원대상

지역 내 발생한 질병, 화재, 풍수해 등 준재해(재난)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등급 1~10등급)

지원내용

보증한도	기업당 5천만원 이내(코로나19 직접피해 1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지원조건	금리 3% 이내, 보증수수로 0.5% ~ 0.8%, 만기 1년일시상환 (최대 5년연장 가능)

지원절차

절 차	재해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 신청 현지조사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지원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 051-860-6600
-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 051-860-6880
-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 051-860-6750
-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 051-860-6700
-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 051-860-6800
-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 051-860-6730
-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 051-860-6780
-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 051-860-6687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개요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업종코드 C10~C34)

지원내용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 접수 – 사전진단 – 사업수행 – 사업비정산 – 비용지급
접수기간	현재 진행 중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문의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부산광역시

부산형
착한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지원개요

채용약정형 'OJT'와 사전 컨설팅에 기반한 '창업'을 통해 부산형 착한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틈새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

지원대상

부산지역 소재 20인 이하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창업기업 창업 지원금 최대 3,000만원 이내 (법인 창업, 종업원 2명 신규채용 조건), 컨설팅 지원

OJT 기업 훈련 강사료 지원 (채용대상자 1년 이상 고용유지 약정 체결 조건), 컨설팅 지원

원스톱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 · 알선, 구인 · 구직자 만남의 장 등 채용 지원

지원절차

- 대상업체 모집 · 지원 : '20. 1. ~ '20.12.(수시)
- 참가문의 및 신청 : 부산고용포럼 방문 및 전화 문의

지원문의

부산고용포럼 : 051-315-7535

부산광역시

MICE행사 지원사업

지원개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행사 개최 시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업체 부담이 가중되는 방역물품 등 행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MICE 관련 업체
- 모집기간 : '20.4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코로나19 행사방역 물품 비용 지원

지원한도	업체당 200만원 한도(지원 90%, 업체부담 10%)
지원내용	열화상카메라 렌탈 비용, 행사장 방역비용, 참관객 대상 방역물품 구입 비용

- 코로나19 부대비용 지원 : 행사 취소, 연기 등에 따른 비용 지원

지원한도	업체당 150만원 한도(지원90%, 업체부담 10%)
지원내용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수수료, 행사 위약금, 주최자와의 분쟁 비용

지원절차

이메일(jrso@bepa.kr), 우편, 방문 접수(부산경제진흥원)

*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업체 先집행, 後지원금 지급

지원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센터 : 051-600-1715

부산광역시

미팅테크놀로지 바우처 사업

지원개요

MICE 행사에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시 기술 사용료 일부를 사후 지원

지원대상

부산 소재 MICE 행사 기획, 대행업체

지원내용

MICE 행사에 도입한 미팅테크놀로지 기술 사용료(미팅테크놀로지 공급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일부를 행사 종료 후 청구에 의해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10개 업체

지원절차

- 미팅테크놀로지 바우처사업 수혜 기업 공모 선정(일정: 유선 문의)

* 공모기간에 미팅테크놀로지 적용계획서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대상 업체 선정

※ 2020년 10개 업체 선정(상반기 6개 업체 선정) ▷ 하반기 추가 공모(4개 업체) 예정

- 미팅테크놀로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MICE 행사에 기술 사용 후 부산경제진흥원에 대금 지급 요청

지원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센터 : 051-600-1715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개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 ·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지원대상

중소 · 벤처기업 8만개사

지원내용

비대면 서비스 도입 ·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① 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 관리 서비스
②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 · 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 네트워크 · 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 에듀테크 (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기업 내 임 ·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 · 중 · 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
⑤ 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⑥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 · 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상기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 ·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에듀테크 분야는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한 초 · 중 · 고교를 우선 대상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20.8.19.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문의

K-Startup 홈페이지 : www.k-stratup.go.kr

부산지역
주요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6

채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중소 ·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위기업종 일자리 매칭 지원
관광 · MICE 성장사다리별 고용체계 조성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주력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소재 · 부품 · 장비 중심 고용창출
신발산업 첨단융합허브 클러스터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사업목적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3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며,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월보수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별도 승인 필요)

지원제한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 등의 인위적 감원 시 비해당

지원절차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문의

- 고용센터 : 1350
- 운영기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부산)

연번	관할센터	운영기관명	대표전화
1	부산고용센터	(주)제이엠커리어 부산지사	051-442-6002
2	부산고용센터	퍼스트인잡(주)부산사무소	051-714-2480
3	부산고용센터	(주)잡플랜컨설팅	051-927-9940
4	부산고용센터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051-861-8831
5	부산고용센터	(주)제니엘 부산지점	051-911-0314
6	부산고용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44
7	부산고용센터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0441
8	부산동부고용센터	퍼스트인잡(주)	051-914-2488
9	부산동부고용센터	(주)커리어다움	051-582-8633
10	부산북부고용센터	(주)두원아이앤씨	051-329-7887
11	부산북부고용센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부산울산지회	051-714-0157
12	부산북부고용센터	(사)부산벤처기업협회	051-343-0109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목적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 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구 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240 만원	960 만원
중견 기업	120 만원	480 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고용노동부) →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 계획서) 제출 (사업주)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 사업평가 및 사후 관리 (고용노동부)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부산청 : 051-860-1923~7, 1931, 2072, 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5
- 부산북부 : 051-330-9951~5

고용노동부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개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악화된 경기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①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②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③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사업주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사용) 가입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최대 6개월간 지원
- 중소기업 월 최대 100만원 (6개월 600만원)
- 중견기업 월 최대 80만원 (6개월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

지원절차

신청 ·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고용노동부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홈페이지 : www.ei.go.kr
- 부산청 : 051-860-1923~7, 1931, 2072, 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5
- 부산북부 : 051-330-9951~5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사업목적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2개월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며,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청년에 멘토지정, 자체 업무 지도·교육 실시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근로시간에 따라) 및 관리비10% 추가 지원

시간	인건비	+관리비
30시간 이상	80 만원	8 만원
20 시간 이상	60 만원	6 만원
15 시간 이상	40 만원	4 만원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지원제한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 등의 인위적 감원 시 비해당

지원절차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문의

- 고용센터 : 1350
- 운영기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부산)

연번	관할센터	운영기관명	대표전화
1	부산고용센터	(주)지에스씨넷 부산지점	051-627-1949
2	부산고용센터	(주)에듀인잡컨설팅	051-636-8557
3	부산고용센터	스탭스(주) 부산센터	051-201-2199
4	부산고용센터	(주)제니엘 부산지점	051-911-0314
5	부산고용센터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0441
6	부산고용센터	인지어스(유)부산지사	051-959-3300
7	부산동부고용센터	퍼스트인잡(주)	051-914-2488
8	부산동부고용센터	(주)커리어다움	051-582-8633
9	부산북부고용센터	(주)두원아이앤씨	051-329-7887
10	부산북부고용센터	(주)인덱스루트코리아	051-364-5563
11	부산북부고용센터	(사)부산벤처기업협회	051-343-0109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 만원	360 만원
대규모 기업	360 만원	180 만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 Ⅰ유형, Ⅱ유형(중·장년층)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추진체계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약자 채용 (사업주)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부산청 : 051-860-1923~7, 1931, 2072, 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5
- 부산북부 : 051-330-9951~5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고용보험가입이력 12개월이내,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허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구분	지원금
2년형	총 1,600만원 청년 300만원(월 12.5만원)+기업 400만원〈정부지원〉+정부 900만원
3년형*	총 3,000만원 청년 600만원(월 16.5만원)+기업 600만원〈정부지원〉+정부 1,800만원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따른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해당

지원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청약신청(www.sbcplan.or.kr)

지원문의

- 고용센터 : 1350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부산)

연번	관할센터	운영기관명	대표전화
1	부산	㈜잡서울부산본부	051-804-0683
2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051-990-7011
3	부산	㈜커리어넷부산지사	051-710-7778
4	부산	㈜제니엘부산지점	051-714-2666
5	부산	㈜잡플랜컨설팅	051-927-9940
6	부산	㈜에듀인잡컨설팅	051-636-8739
7	부산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051-861-8831
8	부산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0441
9	부산	(재)부산여성의전화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44
10	부산	㈜지에스씨넷부산지점	051-627-1949
11	부산동부	퍼스트인잡㈜	051-914-2488
12	부산동부	㈜커리어다움	051-582-8633
13	부산동부	㈜잡스토리 수영구지점	051-714-1239
14	부산동부	㈜스마트소셜	051-717-2685
15	부산북부	㈜인덱스루트코리아 부산지점	051-364-5563
16	부산북부	㈜두원아이앤씨	051-329-7887
17	부산북부	㈜일생활균형 재단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051-326-7600
18	부산북부	(사)부산벤처기업협회	051-343-0170

부산광역시

고용위기업종 일자리 매칭 지원

지원개요

조선 · 해양, 자동차부품 등 지역 고용위기업종의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으로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위기 극복 지원

지원대상

조선해양 및 전 · 후방산업, 자동차부품 등 퇴직(예정)자, 구인기업, 취업취약계층

지원내용

- 고용위기업종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 코로나19 위기극복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지원

※ 고용위기업종 및 8개 특별고용위기 추가 업종* 중 고용창출기업 대상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물품)지원

* 8개 특별고용위기 업종 :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및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법, 공항버스

- 구인기업 인력매칭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사업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 홍보

지원절차

부산상공회의소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문의(전화 또는 방문)

지원문의

부산상공회의소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 051-990-7141~3

부산광역시

관광 · MICE
성장사다리별 고용체계 조성

지원개요

부산 관광 · MICE 분야 직무주기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좋은 일자리 환경 지원

지원대상

관광 · MICE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유관기업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기업 행사 개최 지원
  ※ 신규채용 1명당 최대 500만원(이행보증지원, 행사장 사건사고 배상책임 보험, 행사장 방역, 홍보비, 지역업체 전시 참가비 지원 등)
- 관광 · MICE 분야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마이스워크넷(www.mice.or.kr)' 운영
- 관광 · MICE 전문인력 직무주기별 관리 프로그램 운영
- 기업 간담회, MICE 분야 고용유지방안 연구 등 환경 개선
- 관광 · MICE 분야 일자리 이슈 관련 전문가 토론의 장 마련
- 사업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 홍보

지원절차

MICE 워크넷(www.mice.or.kr)에서 공고 확인 및 전화 문의

지원문의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 051-740-7821

부산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주력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개요

부산시 7대 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특화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 통하여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 지원

지원대상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부산 7대 전략산업 등 구인기업

※ 부산 7대 전략산업: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지원내용

– 주력산업 특화형 '구인 · 구직 매칭 전문가팀' 운영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 기업의 구인 · 장기근속 여건과 구직자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인사 · 노무 · 지원사업 설명회, 기업탐방, 직무능력향상 OJT 교육 등

– 구인기업과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관 연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원절차

부산경영자총협회 잡매칭 지원단 방문 및 전화 문의

지원문의

부산경영자총협회 바로일구하기센터 : 051-866-8519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 중심 고용창출

지원개요

소재 · 부품 · 장비(기계) 산업의 ACE(Automatic/Clean/Easy) 전환 및 기술 고도화, 제조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대상

부산지역 소재 · 부품 · 장비(기계) 분야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 친환경 소재 · 부품 · 장비(기계) 분야 기술개발 지원
  - ① 시제품 제작 지원 : 목업 제작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② 제품 고급화 지원 : 디자인 개선 지원, IT 융합 지원, 시험분석 및 인증획득 지원
  - ③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 전문가 매칭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지원
    - ※ 한 기업당 최대 3명 기준 → 1,500만원까지 지원 가능(코로나19 피해기업 우선 지원)
- 제조혁신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
  - ① 기업 컨설팅: 기업진단, AI엔지니어링, 표준화가이드 등(1개사 당 최대 237만원 한도)
  - ② 시제품 제작: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1개사 당 최대 960만원 지원)
  - ③ 고용창출: 기술컨설팅, 시제품 제작지원 연계 고용창출(1개사 당 2명 채용)
    - ※ 코로나19 피해기업 우선 지원

지원절차

- 친환경 소재 · 부품 · 장비(기계) 분야 기술개발 지원
  → 부산산학융합원 방문 및 전화 문의 ※ 상시 모집
- 제조혁신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방문 및 전화 문의 ※ 상시 모집

지원문의

- 부산산학융합원 : 051-970-1809~10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051-749-9453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첨단융합허브 클러스터 지원

지원개요

신발산업에 대한 맞춤 지원프로그램으로 산업 활성화 및 수혜기업의 일자리 중심 직접 고용 창출을 지원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신발관련 기업

지원내용

마케팅, 맞춤 컨설팅, 환경개선, 시제품 개발비 등 지원

※ 지원금 범위 내 필요분야 중 지원

→ 세부지원 내용 중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제 선택

→ 세부과제별 최대 지원금액 有 (1인당 300~400만원)

※ 기업부담 별도 없음

지원절차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

지원문의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 051-979~1763

memo